

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
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09.26.) 및 건설부고시 제533호(1979.12.28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88호(2013.11.21.)로 변경·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54호(2024.11.14.)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5-192호(2025.12.19.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3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가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요지

- 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 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 - 명 칭 :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)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
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일대
 - 면 적 : 4,386.3㎡ (대지면적 : 4,215.5㎡, 정비기반시설 : 170.8㎡)
- 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키움코어랜드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제1호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, 11층
- 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약 48개월
- 5) 건축계획 : 지하7층/지상32층, 연면적 70,189.38㎡,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

나. 공람개요

- 1) 공람기간 : 2026.04.03. ~ 2026.04.22. (14일간)
- 2) 공람장소 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 02-2148-2672)
(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1, 8층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기타 관계 서류

- 공람 장소에 비치

붙임 공람의견서 1부. 끝.

